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35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1093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8.

판 결 선 고 2015. 12.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938,480원, 지방교육세 731,840원, 농어촌특별세 334,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6면 6행부터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외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세 및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각 세목의 세율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부과 근거 법령의 규정 또한 과세물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납세고지서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결과통지에도 부과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마찬가지이고, 취득세의 과세표준도 납세고지서와 달리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 6면 밑에서 7행부터 8면 마지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신법[1]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1면 밑에서 6행의 "위법"을 "실체적 위법"으로 바꾸고, 밑에서 5행부터 12면 끝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14면 5,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5)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세액과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득세 등의 세목별 세율이나 취득세 등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부천시장은 이 사건 납세고지에 앞서 2013. 4. 25.경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첨부된 '세액집계표'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준, 세율, 세목별 본세액과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세액과 산출 계산식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세액집계표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본세*20%"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 등의 부과 근거 법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납세고지서에는 3억 1,000만 원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1억 5,5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달리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 세목별 과세표준, 적용 세율, 부과 근거 법령 등을 일부 누락하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납세고지서 뒷면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취득세 신고 및 납부안내'란의 기재만으로 각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지방교육세에 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이 10%임에도[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1호] 일률적으로 20%로 잘못 기재되었고, 그 후 이루어진 납세고지에서 본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가 구분 없이 합계액만이 기재됨으로써 취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액 산출근거는 물론 납부불성실 가산세액도 분명치 않게 되었으므로,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